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이신혜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스물일곱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에 동참해 주신

「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□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안은 청년 구직자들에 대하여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규정하여,

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구직비용 절감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

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